

대구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2가합20025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원창

피고 1. A

2.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도낙희

피고보조참가인 1. 주식회사 C

2. D

3. E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

담당변호사 이재경

변론 종결 2023. 4. 6.

판결 선고 2023. 5. 4.

주 문

1. 가. 주식회사 C과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5. 6.

체결된 매매계약을 693,382,47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693,382,472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C와 피고 A 사이에 2021. 2. 2. 체결된 매매계약을 2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A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의 대출 및 원고의 신용보증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원고가 C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F	2016. 4. 6.	560,000,000원
G	2019. 7. 4.	160,000,000원

2)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르면, C은 원고가 C의 대출채무금을 각 은행에 대위변제할 경우 원고에게 위와 같이 대위변제한 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C은 F과 G에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공하여 대출을 받았다.

나. C과 피고 A 사이의 매매계약

1) C은 2021. 2. 2.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에게 C 소유였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억 2,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2021. 2. 5. 중도금 6,500만 원을 지급받고, 2021. 2. 28. 잔금 6,000만 원을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와 동시에 지급받기로 정하였다.

2) C은 2021. 2. 5.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A로부터 중도금 6,5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피고 A 앞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과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의 매매계약

1) C은 2021. 5. 6.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B에 C 소유였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4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장 매매 계약서

매도자 C(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자 피고 B(이하 "을"이라 한다)의 사이에 다음과 같이 공장매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공장의 표시]

제조공장

1. 토 지 : 경북 문경시 H
2. 건 물 : 문경시 H 위 건물일체
3. 부대설비 : 레미콘제조 설비시설
4. 기 계 : 레미콘 제조기계

- 1) 콘크리트배치플랜트 1식
- 2) 레미콘 재생설비 1식
- 3) 수변전시설외

제2조 [목적]

"갑"은 "을"에게 아래 표시의 공장을 현상태 그대로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

제3조 [매매대금]

1. 일금 이십사억원(₩2,400,000,000원)
2. 계약금은 미결제부분 육억오천만원(₩650,000,000원)으로 대처한다.
3. 중도금 F 대출금 육억오천만원(₩650,000,000원)
4. 잔금 일십일억원(₩1,100,000,000원)
5. 아래의 표시 공장의 토지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공장 및 설비기계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는 매매대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1) 공장부지 : 문경시 |
- 2) 건물 : 위 토지상의 건물
- 3) 부대시설 : 위 토지상의 모든 시설
- 4) 기 계 : 콘크리트배치플랜트, 레미콘재생설비, 수변전시설

(생략)

제7조 [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을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갑"은 "을"에게 계약 이후 공장인수에 따른 정보제공 및 인수절차준에 최선을 다하기로 함
2. KS승계 및 조합가입 절차에 대해 최대한 협조함
3. 본 계약서는 파기하기로 갑과 을이 합의함. (17자 삽입)1)
- 2) C은 2021. 5. 12.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3) C과 피고 B는 2021. 5. 17. 위 공장매매계약서를 추후 재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
- 4) C과 피고 B는 2021. 6. 29.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의 매매대금과 특약사항 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새롭게 계약서(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서'라 하고, 위 계약서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변경계약서에는 C과 피고 B의 각 대표이사들뿐만 아니라 C의 실제 경영주인 D과 피고 B의 실제 경영주인 J의 날인도 함께 되어 있다. 위 변경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장 매매 계약서

매도자 C(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자 피고 B(이하 "을"이라 한다)의 사이에 다음과 같이 공장매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생략)

제3조 [매매대금]

1. 일금 이십일억오천만원(₩2,150,000,000원)
2. 계약금은 C F 대출금 육억오천만원(₩650,000,000원)
3. C F운전자금 대출금 일십사억원(₩1,400,000,000원)
4. C잔금(₩100,000,000원)을 공장수리비용으로 대처한다.
5. 아래의 표시 공장의 토지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공장 및 설비기계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는 매매대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1) 공장부지 : 문경시 I
 - 2) 건 물 : 위 토지상의 건물
 - 3) 부대시설 : 위 토지상의 모든 시설
 - 4) 기계: 콘크리트배치플랜트, 레미콘재생설비, 수변전시설
 - 5) 건설기계 : 믹스트럭(08년식)1대, 믹스트럭(10년식)4대, 포터1대
- ※ K(믹스트럭(16년식)3대, 로더1대 포함)

(생략)

제7조 [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을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갑"은 "을"에게 계약 이후 공장인수에 따른 정보제공 및 인수절차준에 최선을 다하기로 함

(2.3. 생략)

4. "갑"의 F 운전자금(₩1,400,000,000원)중에서 현금차용금 및 추가공장수리비 대금으로 (₩300,000,000원)을 차감하여 (₩1,100,000,000원)으로 한다.

5. 운전자금(₩1,100,000,000원)을 "을"이 인정하며 2년 (21년 7월 1일~ 23년 6월 30일)으로 하며 기간만료시 전액을 탕감하며 그 동안 발생하는 은행이자 "을"이 책임진다.

6. "을"은 운영자금(대출금)(₩1,100,000,000원)에 대한 보증용으로 부동산 담보설정(₩400,000,000원)하고 피고 B 대표이사의 현금차용증서(₩700,000,000원)을 공증한다.

(6번항은 2021. 6. 28. 설정 및 공증을 완료하였음)

7. 2년동안 E을 직원으로 입사하여 월(₩2,000,000원) 급여로 지불한다.

8. "갑"은 2년동안 "을"의 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

9. 신용보증기금 영주지점으로부터 C으로 인해 피고 B에 가압류(₩720,000,000원)된 사해행위처분에 대해 D, L는 C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미수금 6억원으로 우선처리하며, 부족부분도 해결한다.

피고 B의 경영활동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이하 생략)

라. 보증사고의 발생에 따른 원고의 대위변제

1) 원고는 2021. 5. 14. C에게 이 사건 보증약정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21. 7. 14. F에 561,943,672원, 2021. 7. 22. G에 160,276,163원을 각각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대구지방법원에 C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금과 위약금 및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에 일부 회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인 718,382,4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1. 7. 30.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다(위 법원 2021차전1196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가 2 내지 8호증, 을나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은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과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매매계약 당시 C과 체결한 위 각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의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0다43870 판결,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7다2877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그 당시 이미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보증약정과 그에 기한 대출은 이미 이루어져 있었고,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체결일과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보증사건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구상금채권이 성립된다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원고가 위 보증사건에 따른 C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면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과의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당시 C이 이 사건 제1 부동산과 이 사건 제2 부동산 외에는 달리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이 없고, C의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718,382,472원, F에 대한 채무 1,351,800,000원, G에 대한 채무 49,604,000원, 주식회사 O에 대한 채무 41,466,000원이 있으므로, C과 피고들이 체결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C의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일련의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도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일련의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그 각 처분행위가 상대방이 동일한지,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이지만(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등 참조), 그 각 처분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처리과정에서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까지도 그 범위를 함부로 넓혀서 하나의 행위인 것처럼 일괄 평가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3387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것처럼,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상대방은 피고 A와 피고 B로서 당사자가 다르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그 내용·가액 등에 비추어 그 체결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일괄하여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과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은 각 행위별로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적극재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1억 2,500만 원이고,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24억 원이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거래가액이 기재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 2호증)에 기재된 거래가액 또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매매대금과 같다. 원고는 위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는 외에 달리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가장 최근에 거래된 가격으로서,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경우 1억 2,500만 원,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경우 24억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어 그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C이 보유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적극재산의 가액은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²⁾을 아래와 같이 공제한 1,392,200,000원(=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산입액 25,000,000원 +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산입액 1,367,200,000원)이다.

5	F	100,000,000원
시가인정액	125,000,000원	
적극재산 산입액	25,000,000원	

14	F	678,000,000원4) 최초 근저당권설정 당시의 채권최고액은 1,027,000,000원이었으나, 2013. 7. 26. 678,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15	F	130,000,000원
16	F	94,800,000원
17	M	130,000,000원
시가인정액	2,400,000,000원	
적극재산 산입액	1,367,200,000원5) = 2,400,000,000원 - 678,000,000원 - 130,000,000원 - 94,800,000원 - 130,000,000원	

라) 소극재산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N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당시 C의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잔존 구상금채무 718,381,573원6) 및 G에 대한 채무 49,604,000원, 주식회사 O에 대한 채무 41,466,000원, F에 대한 대출금 채무 138,056,000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C의 소극재산은 위 각 채무의 합계액인 947,507,573원7) 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마)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C이 보유한 적극재산의 가액은 소극재산보다 많은 상태였고, 또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C의 적극재산이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나머지인 2,500만 원가량 감소하였으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이후에도 여전히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함을 알 수 있다8).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C에 채무초과상태가 발생하였다고거나, 채무초과상태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그 당시 이미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보증약정과 그에 기한 대출은 이미 이루어져 있었고,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의 체결일인 2021. 5. 6.과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일어난 2021. 5. 14.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구상금채권이 성립된다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원고가 위 보증사고에 따른 C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면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고의 구상금채권 718,381,573원은 이 사건 제2 매매계약과의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무자력 및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것처럼, C은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당시 약 947,507,573원의 채무가 있음에도 피고 B에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매각하였고, 피고 B는 C의 F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외에는 별다른 반대급부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C이 F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C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C에 대하여 갚는 약 6억 5,000만 원의 미수금 채권을 계약금의 지급에 갈음하고 중도금은 F에 대한 채무 6억 5,000만 원을 인수하며 잔금 1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이 사건 변경계약을 통해 C이 F에 부담하는 대출 채무 총 2,150,000,000원(=대출금 650,000,000원 + 운전자금 대출금 1,400,000,000원)을 피고 B가 인수하여 대금 지급에 갈음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위 피고 B의 인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의 대표이사인 P가 C의 실제 소유주인 D의 처 E에게 7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해주었고,

동시에 P의 친척인 Q이 소유한 부동산에 관하여 위 E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은 정상적인 계약이고, 위 공정증서의 작성행위 내지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할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미수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수액의 범위는 얼마인지를 전혀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 B에게 위와 같은 미수금 채권이 존재하였다면 피고 B로서는 C의 신용상태나 채무초과 상황을 더욱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법원의 N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2021. 7. 8. 당시 F의 C에 대한 대출금은 약 7억 원 정도일 뿐이고, 달리 이 사건 변경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C의 F에 대한 채무가 21억 5,000만 원이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아울러 P가 E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해주었다거나 E이 Q에 대하여 담보를 갖는다 하더라도, 그 채권 내지 담보는 E 개인에게 귀속되는 권리일 뿐 법인인 C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원고가 자신의 채무자가 아닌 E 등의 공정증서 작성행위나 담보설정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

또한 피고 B는 C에 이 사건 제2 부동산 외에도 많은 자산이 있었으므로 C은 무자력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피고 B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추측에 불과한 사정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다36296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20293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1) 피고 B는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전까지 C에게 골재 등을 납품하는 등 C와 지속적으로 거래관계를 맺고 있었다.

(2) 피고 B와 C은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레미콘 제조공장과 그 부지인 이 사건 제2 부동산과 아울러 부대시설, 제조기계, 차량 등 C이 수행하던 레미콘 제조 관련 사업에 관한 물적 시설 다수를 포함하면서, 이러한 사업의 기초가 되는 KS 지위승계 및 ISO지위승계, 공장인수에 따른 C의 정보제공의무를 각 규정하는 등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 단순한 부동산의 매매가 아닌 공장 전체의 인수 절차를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2 부동산 외에 C의 다른 자산에 관하여 피고 B가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에 의하여 공장을 양도받는 방식으로 C의 레미콘 제조사업 전체를 인수하려고 하였고, 피고 B는 위와 같은 인수 과정에서 이 사건 제2 부동산이 C의 유일한 자산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C은 2021. 5. 6.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불과 6일 후인 2021. 5. 12. 피고 B에 24억 원가량의 공장 소유권을 모두 이전하면서도 실제로 아무런 대금을 받지 아니하였다. C과 피고 B는 소유권이전등기 직후인 2021. 5. 17.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정산하고 협의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이 어떠한 회사가 사업의 기반이 되는 거액의 물적 자산을 양도하면서 아무런 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채 불과 6일 만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C이 피고 B에 위와 같이 급박하게 공장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 또한 보이지 않는다.

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 그런데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채권자와 수익자 모두 원물반환을 원하고 있고, 원물반환에 의하더라도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의 보전이라는 채권자취소권의 목적 달성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4004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53470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사해행위 당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718,381,573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718,381,573원을 초과하여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이후인 2021. 5. 12.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F의 각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속해 있던 부분인 1,497,200,000원9) 과 자신의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공동담보에 속한 부분의 한도 내에서 자신의 피보전채권액만큼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C과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93,382,47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93,382,472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A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채성호

판사권재호

판사박소영

별지

1) 위 특약사항 3.의 문구는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 끝부분에 C과 피고 B의 각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2)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하나, 이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3) 별지2 목록 기재 1번 토지를 기준으로 한 을구 순위번호이다.

4) 최초 근저당권설정 당시의 채권최고액은 1,027,000,000원이었으나, 2013. 7. 26. 678,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5) = 2,400,000,000원 - 678,000,000원 - 130,000,000원 - 94,800,000원 - 130,000,000원

6) 원고는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2019. 4. 1.부터 지급명령신청일까지의 손해금률 연 8%의 비율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에서 C으로부터 회수한 4,104,782원을 공제한 899원도 함께 채권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당시의 지연손해금과 C으로부터 회수한 시점을 알 수 없으므로, 899원은 채무액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7) = 718,381,573원 + 49,604,000원 + 41,466,000원 + 138,056,000원

8) C과 피고 B는 2021. 6. 29.경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가액을 21억 5,000만 원으로 낮추었으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가액을 변경계약에서 정한 금액으로 인정하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당시 적극재산의 가액은 1,142,200,000원으로서 소극재산인 각 채무의 합계액 947,507,573원보다 많다.

9) = 시가 인정액 2,400,000,000원 - (F의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678,000,000원 + 130,000,000원 + 94,800,000원)